준수사항 (천안어린이꿈누리터)

- 1. 사용자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.
- 2. 사용자는 대관 신청일 최소 3주 전에 대관 신청을 완료해야 하며,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 내에 대관신청을 변경할 수 있다.
- 3. 대관료 및 부대설비 사용료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로부터 사용허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- 4.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예약을 진행하지 않은 경우, 공연장 외의 시설(지하1층 흥놀이터, 1층 야외 놀이터·책누리방·쉼터 등) 사용이 불가함을 사전에 대관 방문자에게 공지하여야 한다.
- 5. 사용자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할 수 없으며, 분실 또는 훼손이 있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.
- 6. 사용자가 홍보물을 공연장 내외에 부착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종료 시 즉시 철거하여야 한다.
- 7. 사용자는 관람객이 음식물을 공연장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여야 한다.
- 8. 사전협의되지 않은 장비, 물품 등의 반입에 대해서는 제한 및 철거시킬 수 있다.
- 9.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(선전, 판매, 예약 등)와 종교단체의 집회·포교,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사용은 불허한다. 이를 위반 시 행사를 중지시키고 대관 사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.
- 10.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(정전, 기기 고장)의 사유로 인하여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료를 천안어린이꿈누리터 운영조례 제 22조(사용료의 반환)에 의거 반환하며, 사용자는 사용료 외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 요구할 수 없다.
- 11. 사용자는 천안어린이꿈누리터를 사용함에 있어 안전 및 안내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.
 - 안전요원은 공연장 출입문 내·외에 최소 각 1명씩을 배치하여 공연 또는 행사 중에 관람객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, 어린이의 입장 및 관리가 필요한 경우 어린이를 통제할 충분한 안전요원을 확보 하여야 한다. 안전요원이 질서유지를 못하여 사고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.
- 12. 대관 허가일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될 시에는 사용자는 사용 일자를 변경하여야 한다.
- 13. 천안어린이꿈누리터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극, 영화, 행사 등 진행할 시에는 반드시 냉방 또는 난방을 하여야 한다. (추가된 냉·난방 및 부대시설 사용 요금은 대관이 끝난 후 정산한다.)
- 14. 무선마이크 배터리 및 기타 소모품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15. 사용자는 행사가 끝난 후 사용한 시설물 및 집기류를 원상태로 반환·복구하여야 하며, 사용한 공연장 내-외부를 청소 완료한 후 관리자와 최종 확인하여야 한다. (분리수거 쓰레기봉투 준비)
- 16. 천안어린이꿈누리터는 사용자가 상기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는 조건으로 사용허가를 통보하며, 상기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천안어린이꿈누리터의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, 천안어린 이꿈누리터는 차후 사용자에게 사용을 불허할 수 있다.
- 17. 공연장 객석 계단 통로에 앉거나 서있지 않으며, 의자 등 거치물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.